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공정거래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업집단국 및 기업집단국 4개과 중 기업집단국 및 기업집단국 3개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집단국 1개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한편,

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업거래정책국에 설치한 기술유용감시팀의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고, 결원이 발생한 사무운영서기보 정원을 행정수요에 걸맞게 행정서기보로 정원으로 변경하며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전부개정(2021. 12. 30. 시행)에 따라 변경되는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, 각 부서의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별첨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제26호를 삭제한다.

제9조제8항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8항제8호 중 “법령”을 “법령·조례·규칙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경쟁제한 규제에 관한 경쟁영향평가 및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

제9조제9항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·운용
9. 외국의 기업결합제도 분석 및 검토

제10조제6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1.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소비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기준의 제정·개정 및 제도 운영

제12조제3항제1호의 “제19조”를 “제40조”로, “제26조”를 “제51조”로 한다.

별표 2 중 행정서기보 “1”를 “2”로 하고, 사무운영서기보 “9”를 “8”로 한다.

별표 2의2 중 행정서기보 “2”를 “3”로 하고, 사무운영서기보 “9”를 “8”로 한다.

별표 3 중 행정서기보 “3”을 “4”로 하고, 사무운영서기보 “4”를 “3”로 한다.

별표 3의2 중 행정서기보 “4”를 “5”로 하고, 사무운영서기보 “4”를 “3”로 한다.

별표 5의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정원 11명에 대한 평가기간을 2022년9월30까지 연장한다.

총리령 제1498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) 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재연장되는 기술유용감시팀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기술유용감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기술유용감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이 분장한다.

신 · 구정원대비표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2]

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 감
	.		.		.	
	.		.		.	
행정서기보			<u>1</u>		<u>2</u>	+1
			.		.	
			.		.	
사무운영서기보			<u>9</u>		<u>8</u>	-1
	.		.		.	
	.		.		.	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2의2]

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 감
	.		.		.	
	.		.		.	
행정서기보			<u>2</u>		<u>3</u>	+1
			.		.	
			.		.	
사무운영서기보			<u>9</u>		<u>8</u>	-1
	.		.		.	
	.		.		.	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3]

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2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 • 행정서기보	• • <u>3</u>	• • <u>4</u>	+1
사무운영서기보	• • <u>4</u>	• • <u>3</u>	-1
• •	• •	• •	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3의2]

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2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	<u>4</u>	<u>5</u>	+1
·	·	·	
·	·	·	
사무운영서기보	<u>4</u>	<u>3</u>	-1
·	·	·	
·	·	·	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[별표 5]

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(제19조 관련)

조직	정원	평가기간
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	11명 (4급 1명, 4급 또는 5급 1명, 5급 5명, 6급 4명)	2022년 9월 30일까지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기획조정관) ① ~ ③ (생략)	제7조(기획조정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혁신행정부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.	④ ----- ----- -----.
1. ~ 25. (생략)	1. ~ 25. (현행과 같음)
26. <u>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, 신설·강화 규제에 대한 경쟁 관련 영향 분석 지원</u>	<u><삭 제></u>
27. ~ 32. (생략)	27. ~ 32. (현행과 같음)
⑤ 삭 제	⑤ (현행과 같음)
⑥·⑦ (생략)	⑥·⑦ (현행과 같음)
제9조(경쟁정책국) ① ~ ⑦ (생략)	제9조(경쟁정책국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⑧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⑧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<u>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·운용</u>	<u><삭 제></u>
7. <u>외국의 기업결합제도 분석 및 검토</u>	<u><삭 제></u>
8. 경쟁제한적인 <u>법령·관행</u> 및	8. ----- <u>법령·조례·규</u>

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
의 수립·시행

<신 설>

⑨ 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
분장한다.

1. ~ 7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⑩ (생 략)

제10조(소비자정책국) ①·②
(생 략)

③ 소비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
을 분장한다.

1. ~ 20. (생 략)

<신 설>

④·⑤ (생 략)

⑥ 약관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
분장한다.

1.·2. (생 략)

칙-----

9. 경쟁제한 규제에 관한 경쟁
영향평가 및 규제개혁위원회
상정 안건 검토

⑨ -----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
· 운용

9. 외국의 기업결합제도 분석
및 검토

⑩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소비자정책국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.

1. ~ 20. (현행과 같음)

21.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
소비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기
준의 제정·개정 및 제도 운
영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「<u>소비자기본법</u>」에 따른 소 비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기준 의 제정·개정 및 제도 운영 4. ~ 10. (생략) ⑦·⑧ (생략) 제12조(카르텔조사국) ①·② (생략) ③ 카르텔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다만, 제4항에 따 라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 원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 1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(이하 “부당 공동행위”라 한다)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(이하 “사업자단체금지 행위”라 한다)에 대한 규제 시책의 수립·운용 2. ~ 17. (생략) ④ ~ ⑦ (생략)	<삭제> 4. ~ 10. (현행과 같음) ⑦·⑧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카르텔조사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----- -----. 1. ----- ----- 제40조----- ----- ----- -- 제51조----- ----- ----- ----- 2. ~ 17. (현행과 같음) ④ ~ ⑦ (현행과 같음)
--	--